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46
----------	-------

제출년월일 : 2024. 11. 11.

발의자 : 이혜경, 박은정, 이지화
유재수, 이대구, 황은화
선현우, 최찬규, 한명훈
설호영, 최진호 의원(11인)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돋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 (안 제6조 ~ 안 제7조)
-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안 제8조)
- 구매 협조요청 (안 제9조)
- 평가 및 포상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붙임 1】 제정조례안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돋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안산시의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8)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646
----------	-------

제안년월일 : 2024년 12월 4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수정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목표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함.

□ 주요골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3항의 내용을 제4항으로 함. (안 제6조)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u> <u>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u> <u>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u> <u>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u> <u>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u> <u>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u>④ (제정안 제3항과 같음)</u>